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6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숙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박상혁,
왕정순, 이원형, 허·훈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장애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법률 개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과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사업, 장애경제인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신설).
- 나.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장애인기업인 대표’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종전의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2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기업인 대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u><신 설></u></p> <p>2. ~ 6. (생략)</p> <p><u><신 설></u></p> <p>7.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 · 상담 · 정보 제공</u></p> <p>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8. <u>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p>	<p>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④ ~ ⑥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기업인 대표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1항 2호	○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 발생
2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1항 8호	△	장애경제인 ¹⁾ 의 기업 경영을 위한 보조 인력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비용추계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지원 대상·범위·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1항 2호 비용발생

나. 전제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장애인기업²⁾으로 전제
- (지원범위) 장애인기업 공공조달 컨설팅(교육) 및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을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2025년 ~ 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라. 방법 : 서울시 관련부서 「2024년도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중 관련예산 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1항 2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수입	○						
	소계(b)						
□ 총 비용(a-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1) 장애경제인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항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2)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참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_장애인기업 등록 현황(5,914개)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2022.10.12. 기준

4. 덧붙이는 의견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애경제인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1항 2호 비용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 ① 장애인기업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100,000천원) + ②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100,000천원)

① 장애인기업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 (서울시 관련부서 제출자료)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나라장터, 벤처나라 등 공공조달 판로 컨설팅 지원 및 공공조달 실무교육 (50개사)

②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브랜드 개발 등 지원(10개사)

※ 장애인기업 현황 (서울시 관련부서 제출자료)

❖ 일반현황(2021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20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 수는 115,347개(전체의 1.9%, 종사자 수는 402,232명(전체의 2.3%)
- 장애인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3.6명, 장애인 고용율은 30.0%
- 규모 및 형태

(단위 : 개, %)

계	성별		규모별		형태별	
	여성	남성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	법인
115,347개	23,300	92,047	103,794	11,553	100,293	15,054
100%	20.2	79.8	90.0	10.0	86.9	13.1

○ 업종별 분포

(단위 : 개, %)

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115,347개	34,435	22,490	20,610	9,875	27,937
100%	29.9	19.5	17.9	8.6	24.1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8,886 (16.4)	7463 (6.5)	5,453 (4.7)	5,733 (5.0)	3,064 (2.7)	3,178 (2.8)	2,287 (2.0)	490 (0.4)	25,219 (21.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229 (4.5)	4,124 (3.6)	5,925 (5.1)	5,016 (4.3)	5,494 (4.8)	7,514 (6.5)	8,386 (7.3)	1,886 (1.6)	115,347 (100)